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종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05

발의연월일: 2024. 6. 12.

발 의 자:김종양・임이자・백종헌

신성범 · 정희용 · 김위상

윤영석 • 구자근 • 윤한홍

최수진 • 이종욱 • 송언석

김형동 • 한지아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각축전 속에서 정부는 대한민국이 도약하기 위한 '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'을 수립하고, 첨단산업 초강대국 도약을 위한 6대 핵심과제와 원전, 반도체, 미래차, 로봇 등 첨단산업별육성전략을 발표했음.

이러한 첨단산업은 그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고 원천기술의 선점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경쟁에서 밀려날 우려가 큼.

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'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'에 따라 첨단 산업 기술개발의 거점이 될 창원 방위·원자력 융합 등 15개 국가산 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하고, 그동안 지방 국가산업단지 지정의 걸림돌 로 작용했던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 등을 적극 완화하여 산업단지 지정을 신속히 추진하고자 하고 있음.

그러나 현재 이들 후보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고,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후속절차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가산업단지를 다른 국가산업단지에 우선하여 신속히 지정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한 지정을 위한 각종 절차 또는 조치에 협조하도록 정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첨단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7조의8 신설).

법률 제 호
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8(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특례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반도체, 미래자동차, 우주, 원자력발전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가산업단지(이하 "국가첨단산업단지"라 한다)를 다른 국가산업단지에 우선하여 신속히 지정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신속한 지정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실시되는 각종 절차 또는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7조의8(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
	특례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반
	도체, 미래자동차, 우주, 원자력
	발전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
	는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
	지정하는 국가산업단지(이하
	"국가첨단산업단지"라 한다)를
	다른 국가산업단지에 우선하여
	신속히 지정하여야 한다.
	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
	항에 따른 신속한 지정을 위하
	여 이 법에 따라 실시되는 각종
	절차 또는 조치에 협조하여야
	한다.